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플

습기로운 보육활동 보호생활

6편: 불법정보유통 행위 /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배포 행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플



보육활동 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법정보유통 행위

개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육교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육교직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

※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불법정보유통 행위(명예훼손)

요건	확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통하여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input type="checkbox"/>
공공연하게	<input type="checkbox"/>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input type="checkbox"/>
명예를 훼손	<input type="checkbox"/>



예시

- 카카오톡, 메신저, 인터넷 카페에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글을 올리는 경우
- 인터넷 맘카페에 'OOO 어린이집 OO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한 경우
- 보육교사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 보육교사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 음란물 유포에 해당함

현장사례

"저는 작년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어요. 혼자 아이가 뛰다 넘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나 제가 배식 중이라 다른 교사가 아이를 안아주었음에도 담임이 아이를 안아주지 않아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고소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부모는 아동학대로 결론지어 ○○지역카페, 국민청원 등을 통해 여론몰이를 했고, 결국 5개월만에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저는 이미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어 사실과 관계없이 아동학대 교사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 현장사례 재구성



판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 관한 사실을 게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그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진실성 증명이 없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으며,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참고: 불법정보 관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형

-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유통 처벌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위반 판단 기준

• 반복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에 따른 위반 여부는 반복성에 의해 결정됨. 즉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을 전화·이메일·SNS 등을 통해 1회성으로 발송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 여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동일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8310 판결 참조



보육활동 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녹음·배포 행위



개념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예시

- 보육교사 모르게 녹음기를 이용하여 보육교사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불법 녹음한 것을 무단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
-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사의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이를 단체 채팅방 또는 맘카페에 게시하는 행위

현장사례

11년차 어린이집 교사인 임모씨는 "최근 옆 반 학부모 중 한 명이 아이 치마에 주머니를 달아서 녹음기를 들려 보냈다"며 "당황한 교사가 학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학부모 상담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 출처: 뉴시스 "요새 세상이 험해서"... 어린이집 '녹음기 등원' 논란 (2023.6.13)



판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몰래 녹음한 사건은 교실에서의 교사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제3자(학부모)가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 없음으로 판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풍**

참고: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통신비밀보호법」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1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제16조(벌칙)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